

TRANS- HUMANITIES

Title : 근세 한국과 일본의 가족 비교: 영속성(永續性)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Comparison of Families in Modern Korea and Japan:
From Aspect of Realization of Permanence**

Author(s) : 문숙자 (MOON Sook-Ja)

Source : *Trans-Humanities*, Vol. 6 No. 2 (2013), pp. 83-113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c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근세 한국과 일본의 가족 비교 -영속성(永續性)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문숙자

1. 머리말

가족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이 가족의 절대적 조건으로 거론되지 않게 된 현대사회의 가족상은 매우 충격적 변화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가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혈연 혹은 혈통만큼 오랜 기간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어 온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전근대 가족의 중요 담론 중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영속성(永續性)’이다. 어떤 공동체보다도 계승 또는 존속을 지향하는 성향이 가족에서 보인다는 점에서 영속성을 가족의 특성으로 칭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족을 둘러싼 담론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특성으로 일관되게 거론되어 왔던 것이 영속성이고, 이는 혈연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숙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www.kci.go.kr

지금까지 가족에 관해서는 가족구조와 가족관련 법제의 현황과 변천 등을 밝히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혼인 및 거주율, 재산 상속과 봉사(奉祀) 관행 등 실제 가족 내의 생활 양태에 관한 연구성도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이 중 가족의 영속성에 대한 논의는 가족구조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실제 가족 구성원의 생활 양태 및 관습과 관련된 논의이기도 하다. 예컨대, 한국사에서는 가족의 영속성을 흔히 '가계계승'으로 지칭해 왔다. 이는 가족구조로 접근하면 직계가족화에 대한 논의일 수 있으나, 입후(立後)나 형망제급(兄亡弟及)의 관습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의 영속성에 관한 논의는 구조와 현상 모두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본고는 영속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근세 한국의 가족을 관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를 전후한 시기가 관찰 대상이다. 덧붙여 조선시대 가족의 특성을 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일본의 근세 가족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 가마쿠라 이후의 중세 가족으로부터 에도 시대의 근세 가족에 이르는 가족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영속성의 관점에서 가족의 특성을 비교 논의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상속을 통해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경제력이 계승되는 양상과, 그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세대가 인적 계승을 하는 양상을 소개하기로 한다. 조선의 경우 인적 계승 즉 가계계승에 대한 인식보다는 조상에 대한 봉사가 끊이지 않게 한다는 의식이 우선이었다. 따라서 봉사와 가계계승의 관계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에 관한 논의에서 중세근세라는 시기 구분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정치경제체제의 변화가 가족 구성이나 가족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근세의 가족은 중세의 그것과 많은 공유점을 가진 채 서서히 변화해갔다. 궁극적으로는 변화의 방향이 어떠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족의 영속성을 어떤 방향

으로 지향해 나가도록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보고자 한다.

2. 가계의 경제적 지속, 재산상속

가족은 재산상속을 통해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고, 다시 경제적 지속과 계승의 발판으로 삼는다. 재산상속에는 가족을 존속시키는 경제적 토대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재산의 분할상속과 1인에 대한 지정상속을 두고 전자는 다음 대(代)의 생존에, 후자는 대를 이어 가계를 계승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상속방식이라고 칭하기도 한다.¹⁾ 그런 관점에서라면 전근대 한국과 일본은 모두 분할상속의 관행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가계계승을 의도한 상속이 아니었다고 할 것인가. 재산상속 양상과 가족의 경제적 지속 방식을 연관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1)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시대 재산상속의 특징은 ‘균분(均分)’에 있다. 삼국시대부터 이미 균분상속의 관습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나(최재석, 「신라시대 여자의 토지소유」 8-11), 확실한 기록이 뒷받침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즉 『고려사』를 비롯한 각종 기록을 통해 13세기 전후부터는 균분상속 관행이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²⁾ 고려후기부터 조선중기인 17세기경까지 아들과 딸에게 동등한 상속권을 부여하는 ‘제자녀균분상속(諸子女均分相續)’은 지속되었다. 17세기 이후 균분상속제는 변화하지만, 딸에게

1)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자원이 희소한 경우 직계로 상속되기 보다는 방계적으로 재산이 이동하여 후대의 생존을 우선하게 되고, 기술의 진보에 따라 하방으로의 상속, 직계로의 상속이 유리해진다는 논리이다(배상훈 63).

2) 문숙자, 「고려시대의 상속제도」, 『국사관논총』 97, 2001. 41-44 참조.

차등상속을 했을 뿐 이들 간에는 균분이 더 오랜 기간 이어졌다. 따라서 거의 조선 전 기간 동안 상속제의 기초는 균분을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균분상속은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명시되어 법제적 뒷받침을 받았다. 법전에 규정된 여러 원칙 중 균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다음 조항이다.

未分奴婢 衆子女平分 承重子加五分之一 … (『경국대전』 형전, 사천조)

이 조항은 ‘(부모의)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은³⁾ 중자녀(衆子女)에게는 평분(平分)하고 승중자(承重子)에게는 1/5을 더해 준다’로 풀이된다. 이 뒤로는 양첩자녀에게는 1/7, 천첩자녀에게는 1/10을 뺀으로 준다는 규정이 이어진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모 재산 이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예를 들면 ‘적처(嫡妻)에 자식이 없는 사람의 재산’ 그리고 ‘적처와 양첩(良妾)에 자식이 없는 사람의 재산’ 등에 대한 상속분이 계속 명시되어 있다.

위에 규정된 ‘평분’이 바로 조선조의 재산상속의 중요한 원칙이 된 평균분급 즉 균분상속 조항이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에 대한 평분의 유자격자는 중자녀이다. 중자녀란 흔히 적자녀를 의미한다. 더 세분할 때는 적장자(嫡長子)와 대비되는 의미로 적중자(嫡衆子)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아들과 딸은 차별하지 않았지만 균분상속의 대상으로 첩자녀(妾子女)를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한편 승중자에게는 적자녀 한 사람 뺀의 1/5을 가급(加給)하도록 규

3) 원문에는 ‘아직 나누지 않은 노비’로 쓰여져 있으나, 이는 노비를 대표 재산으로 하여 기술한 것이지 노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 관련 법규정은 노비를 대표로 기술하고 말미에 ‘田宅同’을 추가하여 전택의 경우도 노비 관련 규정에도 준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정하고 있다.⁴⁾ 승중자란 가계계승을 염두에 둔 용어이며⁵⁾, 따라서 위 규정은 가계계승자에게 증자녀 몫의 1/5을 더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반포된 조선 초기에 조선의 양반가에 승중자 또는 가계계승자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적장자이든 말자(末子)이든 특정한 한 사람이 가계를 계승한다는 관념이 조선초기에 사가(私家)에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위 승중자 규정은 재산 상속에서는 ‘봉사(奉祀)’ 및 ‘봉사를 맡은 자’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⁶⁾ 그 또한 봉사자가 한 사람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식이라면 누구나 돌아가면서 봉사자의 역할을 하였다. 재산상속 문서인 분재기에 ‘봉사조리는 항목을 두고 상속분 외에 별도로 운용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봉사조란 제사의 소용에 쓸 용도로 설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분재기에는 이를 ‘승중조(承重條)’, ‘주사조(主祀條)’, ‘봉사조(奉祀條)’, ‘제위조(祭位條)’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승중을 ‘봉사’ 정도의 의미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승중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1/5의 재산을 봉사조로 지정하여 제사를 지내는 데에 쓰도록 이를 운용하였다. 요컨대, 조선의 재산상속에는 봉사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가계계승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균분상속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가 몫별로 관리하였다. 조선전기 분재기에 등장하는 ‘부변전래(夫邊傳來)’ ‘처변전래(妻邊傳來)’ 등의 용어는 부부가 각각의 재산을 소종래별(所從來別)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처변 재산을 남편이 매매하거나 처분할 때 처

4) 해당 조항의 뒤에 ‘如衆子女各給五口 承重子給六口之類’라는 주석을 달아 전체 재산의 1/5이 아니라 한 사람 몫의 1/5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경국대전』 형전, 사천조).

5) 조선후기인들이 승중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음의 茶山의 저작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主祭曰承重 主祭者死 立其長子 無則立其嫡孫 無則立其次子 使之主祭是之謂承重 是之”(『與猶堂全書』 3集 「喪禮四箋」 承重 二).

6) 분재기에서 제사의 소용에 쓸 용도로 설정하는 재산을 ‘승중조(承重條)’ ‘주사조(主祀條)’ ‘봉사조(奉祀條)’ ‘제위조(祭位條)’ 등으로 혼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의 동의를 받는 정도의 관행에 그쳤으며, 17세기경이 되면 소종래별 관리 관행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위와 같은 조선시대 균분상속 관행은 혼인 후 일정기간 처방(妻方)에 거주하는 거주율과, 조상 제사를 모든 자식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윤회 봉사(輪廻奉祀) 관행이 뒷받침되면서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7세기 이후 여성을 균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상속 관행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변화 역시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거주율과 봉사방식, 가계계승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 점차 처방 거주 기간이 짧아졌고, 봉사의 의무에서 딸들이 멀어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딸에 대한 차등상속을 실행하는 집안이 증가하였다. 재산상속 방식이 제자녀균분상속(諸子女均分相續)에서 제자균분상속(諸子均分相續)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딸에게만 차등을 둔 상태로 아들들 간에는 다시 균분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그후 봉사조 또는 종가로만 세전(世傳)하도록 지정한 재산을 늘려 종가에 힘을 실어주고 균분상속할 재산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19세기 전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라도 균분상속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8세기 이후 에도까지

일본의 경우 에도시대의 재산상속과 가족 양태는 전반적으로 조선시대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본사에서 재산상속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의 율령법인 8세기의 양노령(養老令)의 호령(戶令) 응분조(應分條)에서 재산상속과 관련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재주(財主)의 사후에 유산을 그 적서자(嫡庶子)·과처(寡妻) 등 사이에 분배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牧野 巽 138). 재산 상속분의 경우 적모·계모·적자에게 각 2분(分), 서자에게 1분(分), 그리고 딸과 첩

에게 반분(半分) 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자간(衆子間) 상속분은 동일하나, 아들과 딸에 대한 상속분이 각기 다르고 적서가 구별되고 있다. 한편 같은 8세기 초에 관원인 경우는 재물의 반과 기타 재산을 모두 적장자가 상속하며, 나머지 반을 중자와 첩자가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하였다(大竹 秀男, 牧 英正 67-68).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그 기록이 쓰여진 11세기말경의 대표적 재산은 동산과 장원전자가옥 등이었으며, 이들 재산은 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분할상속 되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⁷⁾ 나아가 각 상속재산은 상속자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내포한 독립재산이었음을 강조하였다(服藤 早苗 12).

그 이후인 중세 가마쿠라 시기의 여성들이 친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남편과는 별재(別財)로서 관리한 사실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성 중 적녀(嫡女)만이 상속인이 되거나⁸⁾, 제한된 일부 여성만이 남성과 동등한 상속권을 누렸다는 것이 무가(武家)의 재산상속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가마쿠라 시기 토지로 대표되는 재산상속에서 아들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 존재는 적녀뿐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고대 헤이안 시대부터 중세 가마쿠라 시기까지 분할상속이 대세를 이루었다. 다만 여성이 균분상속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는 데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여성이 상속에 참여하기는 하나 남성의 상속권이 우세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재산을

7) 『곤자쿠 모노가타리슈』는 헤이안 시대(794-1185년) 후기에 완성된 작자 미상의 설화집이다.

8) 적녀(嫡女)란 적서(嫡庶)에서의 '적(嫡)'의 의미가 아니라 중녀(衆女)에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적녀로, 곧 장녀라는 뜻이다. 전근대 시기에 '적자를 놓고도 서자(庶子)에 대비되는 정처(正妻) 소생의 아들을 의미하는지, 중자(衆子)에 대비되는 장자를 의미하는지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의 적녀 역시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

상속했기 때문이다(服藤 早苗 30). 즉 에도시대 이전까지 조선전기에 행해진 바와 같은 딸을 포함한 균분상속 관행은 없었다. 특히 일본은 가부장의 유언을 중시 여겼고, 법정 상속은 유언이 없을 경우에 비로소 행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는 가부장 중심의 재산상속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에 대한 지정상속은 나타나지 않고, 다수의 상속 대상자에 대한 분할상속이 유지되었음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한편 중세 무가의 경우 부부별재(夫婦別財)가 일반적이어서 여성들은 자신이 친정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남편과는 별재로서 독자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고초 연간(弘長年間, 1261-1264)에는 친정에서 상속 받은 처의 토지를 양도받은 남편이 아내가 사망한 후 재혼한다면 그 토지를 처가에 반납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鈴木国弘 147). 이는 조선전기 자식 없이 죽은 처의 재산을 처가에서 환수한 것과 비슷한 조치로서⁹⁾, 부부 별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영만은 별도로 할 수 없었고, 남편과 공동으로 하는 체재였다.¹⁰⁾ 경영에 있어서는 대사회적(對社會的)인 '가주(家主)'인 남성이 있어야만 했으며(服藤 早苗 29), 여성은 상속인일 뿐 토지 경영, 나아가 가(家)의 경영에 있어서 독자적인 경영 주체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로마치로부터 전국시대에 이르는 중세후기에 오면 토지의 소유와 상속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제한을 보인다. 제한의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영대(永代) 소유상속에서 일기(一期) 보유로 변화

9) 조선전기 몇 개의 알려진 소송사례를 통해 보면, 혼인 후 소생을 낳지 못하고 사망한 여성의 재산은 친정으로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숙자, 「조선전기 無子女亡妻 재산의 상속을 둘러싼 소송사례」, 『고문서연구』 5, 한국고문서학회, 1993 참조.

10) 長野 ひろ子は 이를 가리켜 '부부가 각각의 토지 재산을 가지고 경영은 함께 하는 토지의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젠더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표현하였다(8-10).

한 것이다. 즉 여성에게 토지를 상속하기는 하되 당대에 한해 보유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반환케 하는 것이다(長野 ひろ子 8-10). 이는 딸이 곤궁하게 살지 않도록 부모가 배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後藤 みち子 42-43). 조선시대 첩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종종 나타나는 방식과 유사하며, 상속이라기보다는 생계 보장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일시적 증여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상속하는 토지의 규모가 소규모화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극히 소량의 재산이 한시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런 형태의 상속인이 된 여성의 친정에서의 발언권이 약화될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즉 전반적인 가계 경영이 남성을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정한 토지 상속분과 영구적인 상속, 상속분에 대한 부부별채 방식의 소유가 보장된 중세 전기에도 남편과의 공동경영으로 재산의 소유와 상속이 일정부분 가부장적 가계 경영 쪽으로 유도되는 부분이 있었다. 중세 후기 재산상속에서의 여성의 권한의 위축은 더욱 남편에의 의존도를 높이며 가부장적 가계 경영의 원숙한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사에서 재산상속을 비롯한 가(家)의 운영이 보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은 무로마치 시대로부터 전국 시대에 이르는 중세후기부터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기 이후 재산상속방식은 점차 분할상속으로부터 단독상속으로 이행하였다. 단, 이때 단독상속은 처음부터 장자에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식 중 실력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는 방식이었다. 전국시대의 영지 쟁탈전이 끝나 신분제 질서가 바로잡힌 후에야 비로소 장자 단독상속제로 전환한다. 장남 혼자서 집안의 봉록을 상속하여 집안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독(家督) 상속의 개념도 이때부터 정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노우에 키요시 169-170).

근세 에도시대 이후는 토지의 소유와 경영, 나아가서는 계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남성들의 계보적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무가의 경우 재산상속은 장자 혹은 능력있는 아들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상속의 경향을 띠었다. 그들은 재산의 소유주체·경영주체일 뿐 아니라 자신들만의 계보 내에서 이를 계승함으로써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이 가계 경영의 경제적 부분을 독점하는 형태를 만들어나갔다.

3. 제사상속과 가독상속

1) 조선시대 봉사 관행과 그 의식세계

어느 사회에서나 재산상속은 가계계승과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혼인 양상과 거주율을 비롯한 가족 전반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고려후기에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재산상속의 변화가 가계계승을 비롯한 가족 시스템 내부의 여러 관행과 변화를 함께 했음은 단적인 예라 하겠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가계계승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조선시대에는 제사상속과 가계계승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다. 즉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있어서 가계계승은 봉사(奉祀)를 위한 전제조건이거나, 봉사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죽은 조상에 대한 봉사를 철저히 하고, 봉사를 위한 대(代)가 끊기지 않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계를 잇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재산을 균분상속하던 조선시대에 조상 제사는 윤회봉사(輪廻奉祀)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아들딸이 동등하게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방식이었다. 이는 봉사를 가계계승보다는 부모나 조상에 대한 사후봉양(死後奉養)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음을 의미한다.¹¹⁾ 재

11) 정공식은 제사의 의미를 조상에 대한 사후봉양과 가계계승 두 부분에 두고, 조선 전기에는 사후봉양의 의미가 강하나 후기로 내려올수록 사후봉양보다는 가계계승의 의미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았다(정공식, 「조선조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6 참조).

산을 균분상속한 자식들이 부모를 함께 봉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편 아들이 없는 경우라도 봉사를 딸, 나아가서는 외손이 담당할 수 있으므로 입후(立後)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딸에게 봉사를 맡겼다고 해서 가정의 경험이 단절되는 일은 없었다. 처방거주 관습과 재산의 균분상속 관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윤희봉사는 자연스럽게 정착되었고, 봉사에 있어서 딸들도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다만 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사위가, 그리고 사위가 사망한 이후에는 외손이 담당했을 뿐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균분상속제로부터 딸들이 제외되면서 윤희봉사 관습 역시 변화하였다. 재산을 적게 받는 딸들에게는 봉사하는 제사의 범위 역시 축소된 것이다. 17세기 후반 딸에 대한 차등상속을 명시하고 있는 분재기(分財記)들은 한결같이 이와 짝하여 제사불윤행(祭祀不輪行)을 병기하고 있다. 또 다음과 같이 제사의 불윤행을 차등상속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유훈에, ‘남매가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마땅히 한결같이 공평해야 하나, 이에 공평하게 나누면 제사 또한 똑같이 윤행해야 한다. 내가 보건대, 사대부가의 딸들은 시집간 후에는 본가의 제사를 마음대로 설행하지 못하고 폐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 이는 가히 한심한 노릇이다. 딸에게는 몫을 나눠주되 약간을 감하여 주고 본가의 제사를 윤행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여 일가의 모든 이들이 이를 따라 이미 바꿀 수 없는 가법이 되었으니 이번에도 한결같이 선조의 유훈에 따라 약간을 감등하므로 자손들은 이를 몸소 유념토록 하라.¹²⁾

12) “… 先祖考遺訓內 甥妹分給 所當平均如壹 而既爲平均 則祭祀輪廻 亦當如壹是置 吾觀士夫家女子 于歸之後 本家祭祀 不得任意設行 至有廢閣之患 良可寒心 女息處 給分畧干減等 本家祭祀 勿爲輪廻事 丁寧言說是平等以 一家諸人 皆已遵行 已成不刊之家法乙仍于 今亦一遵先訓 畧干減等 後次子孫體念事”(전북대학교 박물관, 『吳載勳男妹 화회문기(1701)』, 『박물관도록 - 고문

이것은 전라도 함양오씨가(咸陽吳氏家)의 1701년(숙종 27) 분재기에 수록된 조상의 유훈이다. 딸은 출가하면 본가의 제사를 마음대로 지내지 못하여 제사를 빠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제사를 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에 따라 재산 역시 아들에 비해 적게 상속케 한다는 내용이다. 제사의 불운행을 이유로 재산의 차등상속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면 제사 또한 운행해야 한다는 부분은 균분상속과 윤희봉사의 불가분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17세기까지는 사위가 처가 제사를 봉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딸이 본가의 제사를 마음대로 설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다. 이런 사고의 전환 배경에는 ‘종법제(宗法制)’를 바탕으로 한 성리학적 논리가 자리잡고 있었다. 종법제란 종가 중심의 친족 편제 원리와, 종자(宗子) 중심의 가계계승 원리가 결합된 유교적 친족질서를 말한다(문숙자 외, 『전통의 맥을 잇는 종가문화』 11-12). 특히 종법에서 말하는 가계계승은 철저히 장자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므로 딸을 포함한 모든 자식에게 제사를 윤행토록 한 것은 종법의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¹³⁾ 결국 딸을 출가외인으로 보고 봉사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은 종법제의 정착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봉사 여부에 따라 재산의 차등분급을 합리화하는 일종의 명분이 되었다.

서』. 1998. 315).

- 13) “ … 我國宗家之法 廢壞已久 輪行衆子 士夫家皆成規例 此則不可變易 至於女子 則出嫁之後 便作他門之人 從夫之義重 故聖人制禮 亦爲降殺 情義俱輕… 吾家則曾以此事 稟定於先人 吾兄弟質定已熟 斷不輪行於女婿外孫之家 使之定式 世世遵行 父子情理 則雖無間於男女 而生前無奉養之道 死後無行祭之禮 則何獨以田民與男子等分乎 女子則以田民三分之一分給 揆諸情義 少無不可 女子及外孫等 何敢有越厥相爭之心乎 … ”(한국학중앙연구원, 『金命說 傳後文書(1669)』. 『고문서집성』2-부안 부안김씨편. 1998. 581-582); 정구복, 「부안김씨기문의 생활모습 - 부안김씨 김석필기문의 삶을 중심으로」,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53-154; 김현영, 「호남지방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 가족과 친족」. 같은 책. 273 참조.

제사가 불운행되면서 사위가 처가의 제사를 지내는 관행이 사라진 것은 외손봉사가 폐지되었음을 말한다. 또 이는 봉사를 담당할 자손의 범위가 친손으로 제한됨을 의미한다. 봉사할 자손의 범위가 축소되자 봉사자의 대가 끊길 확률 역시 높아졌다. 이에 입후를 통해 봉사자를 조달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구현되었다. 입후의 활성화야말로 가계계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입후의 목적을 봉사로 볼 것인지 가계계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흔히 조선시대에 후사를 맞아들이는 것을 입양계사(入養繼祀)로 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양자를 맞아들여 제사를 승계한다는 의미이며, 입후의 1차적 목적이 계사(繼祀)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2) 에도시대의 봉사와 가독상속

일본의 경우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중세 후기 이후 점진적으로 여성의 상속권과 가계경영권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재산상속의 변화가 봉사 관행의 변화를 수반한 것과 달리 일본은 가계계승에 있어서 남성 위주의 승계 방식을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남성이 토지의 경영에 수반되는 지위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재산상속 및 가계계승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이는 가부장적 가(家)의 성립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중근세 일본의 경우 조선시대와 달리 제사와 가계의 존속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근세 한국의 가족에 있어서 봉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 반면, 일본의 가족에서는 어떤 계승보다 중요한 것이 가독상속(家督相續)이었다.

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장남 혹은 대표자 혼자서 집안의 봉록을 상속하여 집안을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독이란 외부적으로 가족을 대

표하는 권한으로, 이는 같은 시기 한국 사회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이다. 무가(武家) 등 지배계층의 경우 대체로 장남이 가독상속자가 되었고, 오히려 재산상속은 가독상속에 종속된 느낌이 들 정도이다.

요컨대 한국의 중근세 사회와 달리 같은 시기 일본은 봉사와 가계계승에서 깊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중세 이전 딸이 집안의 제사를 담당 한 사례가 있으나 제사를 맡은 딸이 가계계승에는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던 것이 그 예가 된다. 예컨대, 중세 무가의 경우 여성 중 일부가 상속인이 되면 그들은 상속의 권리와 더불어 재산을 상속해 준 자기 집안에 대해 의무 혹은 역할이 있었다.

마치 조선시대 재산을 상속받은 딸들이 봉사의 의무를 지녔던 것과 같은 원리이다. 상속인이 된 무가의 적녀(嫡女)가 갖는 가문 내에서의 고유한 기능은, 부모에 대한 봉양과 사망 후의 장례를 주도하는 것이었다. 적남(嫡男)이 가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면 적녀들은 가문 내 생활영역을 운영하고 장례와 제사의 집행을 담당한 것이다. 이런 기능들이 가문 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옥이 위치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딸들의 제사 기능이란 결국은 지주신(地主神)의 노여움으로부터 집안을 지켜주는 신앙적 의미가 있었다(鈴木国弘 155). 다분히 토속신앙적 관념으로부터 유래한 여성의 이러한 가내의 역할도 중세 후기부터는 거의 사라졌지만, 여성이 가내의 봉사권을 가졌었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권한이 친가의 가계계승이나 가족의 존속과는 연결되지 못했으며,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봉사와는 그 의미가 같지 않다고 하겠다.

4. 가계계승과 가족의 영속성

1) 조선의 제사상속과 영속성의 실현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가계계승에 대한 정확한 인식보다는, 조상에 대한 '봉사'에 대해 많은 정성을 쏟고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었다. 그렇다면 봉사와 가계계승은 동일한 것인가. 이 문제는 당시의 위정자와 유학자들에게도 논란거리였던 것 같다. 그들의 논의에서 봉사와 가계계승을 동일시할 때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분리하거나 절충할 때도 있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러한 비일관성은 法制 자체에도, 그리고 실생활에 법제를 적용할 때에도 나타난다.

(1) 제사상속 법제

봉사와 관련된 법제는 고려 말 1390년(공양왕 2)에 반포된 사대부가제의(士大夫家祭儀)로부터 조선의 『경국대전』 봉사조(奉祀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통을 보인다.

八月 庚申朔 頒行士大夫家祭儀…各於其家奉祀 嫡長子孫無後 次嫡子孫之長子主祭 (『高麗史』 권63 志17 禮5, 공양왕 2년조)

이것은 『고려사』에 수록된 사대부가제의로서,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대부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적장자에 후사가 없으면 차적자(次嫡子)의 장자가 제사를 주제한다는 내용이다. 즉 장자에 후사가 없으면 차자의 자손이 주제(主祭)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조선초기의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若嫡長子無後 則衆子 衆子無後 則妾子奉祀 (『經國大典』 禮典, 奉祀條)

이 『경국대전』 조항에서는 사대부가제의에서 더 나아가 적장자 이후 3순위까지 봉사자를 지정하고 있다. 적장자에 후사가 없으면 중자(衆子)가, 중자에도 후사가 없으면 첩자(妾子)가 봉사를 한다는 내용이다. 중자란 적자 중 차자 이하의 아들을 말한다. 두 규정은 모두 적장자에 후사가 없을 때 중자, 그리고 그 자손으로 봉사가 이어지도록 한 점에서 전조(前朝)의 유제를 이은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전통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망제급이란 적장자가 후사 없이 사망하면 종자(宗子)의 지위가 차자에게 옮겨져 차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형망제급의 원칙은 같은 『경국대전』에 입후(立後)에 관한 다음 조항이 수록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經國大典』 禮典, 立後條)¹⁴⁾

이것은 『경국대전』 예전 입후조에 규정된 것으로 직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 동종의 지지(支子)로 후사를 삼고 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¹⁵⁾ 봉사조에서는 적장자에 후사가 없으면 차적자와 그 자손이 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고, 입후조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 동종의 지자로 입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적장자에 후사가 없을 때 형망제급을 할 것인가, 입양을 할 것인가. 이는 봉사조를 먼저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입후조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당시인들에게 있어서 봉사와 입후가 별개의 문

14) 이 조항에는 “兩家父同命立之 父歿則母告官 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라는 주(註)가 첨기되어 있다.

15) ‘동종’이란 속칭 同姓·同本·同派의 中始祖以下の 親屬을 말한다(韓祐 卍 430).

제라면 이 사안은 전혀 논란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다. 봉사를 위해서는 봉사조의 규정대로 형망제급을 하고, 가계계승을 위해서는 입후조의 규정대로 입양을 하면 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봉사와 입후가 무관할 수는 없었다. 입양의 이유는 봉사가 끊기지 않게 하는 데에 있었고, 이런 양자를 특히 '계후자'라 칭하여 가계계승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조선의 사회분위기였다.

앞의 봉사조와 입후조의 두 조문만을 살펴보면, 봉사조는 적장자에 후사가 없을 때의 규정이고 입후조는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의 규정이다. 즉 입후조의 경우 적장자를 특정(特定)한 부분이 없으므로 반드시 적장자에 대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 가문의 족보를 분석하여 입후의 빈도와 사례 등을 분석한 핫토리 타미오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경우 적장자 가계만이 아니라 모든 가계의 대가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였다. 장손 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장손 가계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차손 가계를 위해서도 서로 자손을 교환하는 시스템이 유지되었다는 것이다(服部 民夫 152-154). 결국 조선조는 모든 가계를 잇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음을 뜻한다. 이런 이상을 법으로 뒷받침한 것이 『경국대전』 입후조의 위 조항은 아니었을까. 입후조의 조항이야말로 적장자 가계의 계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계의 존속과 지속을 위한 일반적 규정이라 판단된다.

한편 오히려 적장자 가계의 계승 시스템을 규정한 봉사조는 양자보다는 혈통에 의한 차적자의 승계를 우위에 두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봉사와 가계계승을 동일시하는 조선적 관념체계의 결과물이었다.

(2) 계사(繼祀)와 가계의 존속전략

조선시대의 입후가 적장자 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계의 존속을 이
상으로 한 것임은 실제 양반가에 나타나는 얽히고설킨 출후(出後)·입후

(立後) 관계에서 입증이 되는 듯하다. 양반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계를 잇고자 하는 의식 하에 적장자·중자 구분 없이 입후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계후자로서 고려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니라 양반가의 가계계승 혹은 존속전략으로 칭할 수 있다.

양반가의 가계계승 혹은 존속 전략 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혈통주의’ 전략이다. 흔히 조선시대 가족제를 논할 때 전기에서 후기로의 변화는 외손봉사·형망제급 등의 관행으로부터 입후를 통한 봉사와 가계계승, 아들 중심의 재산상속 및 제사승계 등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아들과 딸, 친손과 외손, 본족과 처족외족 등에 대한 구분 없이 혈통으로 친소(親疎)를 구분하던 의식체계로부터, 친손 위주, 아들 나아가 적장자 우선주의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계 존속 전략이 혈통주의를 벗어난 적은 없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입후의 자격은 ‘동종의 지자’였다. 이것은 본족 내의 아들 항렬에서 양자를 들일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카를 입양하는 것이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그 범위는 5촌에서 20여 촌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¹⁶⁾ 그러나 가계를 잇기 위해 비혈족으로부터 성원을 충원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조선후기에는 전기와 달리 외손을 배제했지만, 친손의 범위 내에서 철저히 혈통주의를 유지한 것이다.

가계 존속 전략으로 두 번째는 신분 내 계승 전략이다. 전술한 바와

16) 조선전기에는 친조카인 三寸姪을 양자로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부득이한 경우 五寸姪을 입양하였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입양의 목적이 가계의 전승에 있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寸數가 멀어지더라도 유능한 이를 양자로 들인다는 명목 하에 19촌, 21촌에서까지 양자를 들이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의 가훈에 수록된 17세기 후반의 繼嗣 의식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或云捨其同生之子 取稍遠者爲子不可云 此則不然 夫子者 體吾身也 傳吾家也 取人子 以爲己子 顧不重耶 不顧遠近擇之可也 …”(權讓, 『永嘉家訓』 繼嗣, 『知足堂集』,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학기초자료선집』 4-근세 2판, 1995, 356-361).

같이 『경국대전』 봉사조에서는 첩자봉사를, 입후조에서는 첩자의 가계 계승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적처에는 후사가 없고 첩에게만 소생이 있는 적장자가 동생의 아들로 후사를 삼고자 하면 들어주되, 자신이 첩자를 데리고 별도로 일지(一支)를 이루고자 하면 그것 역시 들어준다’는 내용이 주석으로 추가되면서 첩자봉사의 범위는 축소되었다.¹⁷⁾ 조상 제사만큼은 첩자보다는 입양을 하더라도 적계로 봉사가 계승되기를 기원했고, 첩자로부터 봉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조상제사는 제외하고 당사자 부처(夫妻)만 첩자로부터 봉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조선후기 사회는 자신의 제사만을 첩자에게 넘기는 행위도 불가하다는 인식이 퍼짐으로써 혈속인 첩자보다는 적계의 입양을 권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는 분위기였다.¹⁸⁾

이런 사회 분위기는 범규정과 관계없이 확산되었다. 실제 양반가의 제사에서 『경국대전』이 규정한 첩자 봉사권은 상당 부분 무시되었다. 즉 입후가 이루어진 경우, 내면을 관찰해 보면 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첩자봉사나 첩자를 통한 가계계승은 법으로는 인정되었으나 실생활에서는 설 자리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적장자 가계 뿐 아니라 차적자 이하의 가계에서, 즉 종가의 가계계승이 아니라 차자 이하 가계의 존속을 위해서도 첩자의 자격은 무시되었다.

가계 존속의 세 번째 전략은 장손 가계 우선 전략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 이후 입후가 일반화되면서 나타나는 경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양반가의 족보를 보면 장손 가계가 아니더라도 모든 가계에서 아들이 없는 경우 입후를 하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635). 이 때 입후 대상은 3촌에서 5촌

17) “嫡長子只有妻子 願以弟之子爲後者聽 欲自與妻子別爲一支則亦聽 …”(『경국대전』 예전, 봉사조)

18) “… 世俗無嫡子 而有妻子者 其妻子謂之血屬 而先世奉祀 歸之於次弟 自己奉祀 歸之於妻子者 或有之 甚不可也 …”(權讓, 『永嘉家訓』 繼嗣. 『知足堂集』.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자료선집』 4-근세 2판-, 1995. 356-361).

7촌, 심지어는 19촌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있지만 同派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¹⁹⁾ 즉 동성동본 중의 동일한 계파 안에서 서로 아들을 교환하면서 각 가계의 유지계승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²⁰⁾

그러나 이렇게 출계후의 범위가 한정되다 보면 모든 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역사가 비교적 긴 장손 가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 따라서 차손 이하 가계는 장손 가계에 대한 양자의 보급원이며, 장손 가계를 존속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장손 가계가 안정되고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를 차손 이하 가계에 계출(繼出)하기도 하므로 장손 가계가 일방적으로 타 가계에 의해 지지되는 것은 아니다(服部 民夫 152-154). 서로 출계와 출입을 교환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것이 동파(同派)라는 범주 내에서 행해졌으므로 오히려 자기 가족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 내에서 혈연의식이 공유될 수 있었다.

이처럼 가계의 존속 전략에는 혈통과 신분, 종통이 고려되었다. 동일한 혈연집단 내에서, 그리고 나아가 적처 소생의 양반 신분을 계승한 자로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 내에서 종통의 승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지차(之次)에 이르는 모든 가계를 잇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다. 가계계승의 목적이 조상에 대한 봉사를 끊이지 않게 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대종(大宗) 뿐 아니라 모든 소종(小宗)에도 봉사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이것은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 동종(同宗)이 아닌 자가 가계를 계승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계계승과 봉사는 서로 다른 의미이지만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19) 안동 川前의 의성김씨 일족에 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좋은 집안에서 양자를 입양하기 위해 그 대상을 엄격히 고른 결과 25촌, 35촌에서 양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문옥표 외 88).

20) 안동 川前 의성김씨의 사례를 보면, 청계공 김진의 아들 代에서 분파한 5개의 계파가 더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 청계의 자손 범주 즉 자신들 5개의 분파 안에서만 입양함으로써 서로 중첩적인 입양관계로 결속되어 있었다(문옥표 외 87-88).

2) 에도시대의 가족과 그 존속전략

근세 일본의 가(家)의 개념은 가장(家長) 부부와 미혼의 자녀를 기본적인 동거단위로 한 공동체로서 중세로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네기시 스미오(峰岸 純夫)는 ‘①대지와 그 내부 가옥을 공유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부부·친자·형제·자매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공동체 ②대지가옥·묘소·농기구 또는 하인을 소지, 관리하면서 주로 친·자 관계에서 이를 계승하는 공동체 ③생산·노동·경영의 단위 ④소령(所領)·소직(所職)·가업·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친·자 관계에서 계승하는 공동체 ⑤친족공동체와 촌락공동체의 구성요소 ⑥영주 지배의 객체 단위’ 등으로 중세 일본의 가를 정의하고 있다(峰岸 純夫 163).

이 정의에서 가족의 구성요소와 성격에 대해서는 한국의 중근세 가족의 개념에 적용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④에 보이는 소령(所領)·소직(所職)·가업 등의 생소한 용어, 그리고 그것이 파생하는 가족 인식에 대한 이질적 요소에 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일본의 가(家)와 한국의 가족이 배태한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용어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소직(所職)과 가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쓰기도 하지만 흔히 ‘가직(家職)’ 등의 용어로 이를 융합하여 쓰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가(家)’라는 단어에 ‘직(職)’을 결합하여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세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관직이 분업화·전문화하는 과정에서 관직이 ‘직(職)’으로 분권화하고 세습화되어 갔다. 따라서 ‘직’이 가업화되며, 이러한 직을 가업으로서 계승해 가는 주체가 ‘가(家)’가 되는 것이다(峰岸 純夫 168). 조선의 양반들이 『쇄미록』·『미암일기』·『목재일기』 등 일기를 남기고 있듯이 일본 중세의 무가에도 조상이 남긴 일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런데 조선의 양반일기가 대부분 생활일기인데 비해, 중

세 일본 무가의 일기는 업무일기인 경우가 많다. 즉 이들은 후손들이 자신의 직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업무 매뉴얼 역할을 하는 일기를 작성한 것이다(尾上 陽介 66-74). 그들은 가를 기초로 일족 등을 조직하여 군역 등에 종사하였고, 가 계승의 객체가 되는 소령(所領)·소직(所職)이 인정되었다(峰岸 純夫 174).

한국의 경우 신분을 의미하는 양반·상민 등의 용어나 유학(幼學)·업무(業武) 등의 직역이라는 용어는 쓰였지만 가족이나 가계 또는 가문에 '직(職)'이라는 단어를 결합시켜서 사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고려시대부터 가업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었는데, 주로 유업(儒業)·무업(武業)·의업(醫業) 등을 통해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이혜옥 457). 조선시대에도 중인의 경우는 의관·역관·울관 등을 세습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 또한 역과(譯科)를 거쳐 가계 내에서 업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양반 신분의 경우 유업을 가업으로 하였으나 동일한 직을 세습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다. 즉 일정한 직을 세전(世傳)하는 '가직'의 개념은 희박했던 것이다.

반면 일본은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는 무가 집단은 물론 농촌의 경우도 가(家)가 하나의 직을 세습하는 단위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의 이런 기능적 측면을 부각시킨 '가경영체(家經營體)'란 표현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중세의 경우 기본적 생산단위는 방계친족과 하인 등 비혈연의 종속 농민을 포함한 대경영으로서의 가 경영체라 할 수 있다. 가 경영체에 있어서 주요한 생산수단은 토지로서, 가 경영체 내에서의 부와 권력의 배분은 토지의 소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중세에는 토지의 소유상속으로부터 여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고, 여성은 생가로부터 양도받은 토지를 지참하고, 하인을 거느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혼가(婚家)에서의 경영에도 가장인 남편과 함께 관여했다.

근세에 오면 농촌의 가 경영체는 직계가족 위주로 재편되면서 방계가

족과 하인 등의 종속농민이 소멸되어 간다. 자식들은 혼인과 동시에 분가하고, 지위를 계승할 아들 한 명만 가 경영체에 남아 가주(家主)의 지위를 계승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직계가족만의 소경영으로서의 가 경영체라 부를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여성은 생가의 토지소유상속으로부터 배제되었다. 따라서 소경영의 여성은 일반적으로 혼인할 때 토지를 지참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혼가의 토지소유와 경영에 관여할 근거를 상실하였다. 근세의 가는 이렇듯 생애수단으로서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남성성의 계보적 연속성에 의해 대대로 계승하는 가부장적 공동체로 변모한 것이다(長野 ひろ子 125-126).

이러한 중근세 일본의 가족이 추구하는 영속성은 재산과 가직 등의 상속과 계승을 통해 확보된다. 여기서 한국의 가족과 가장 다른 점은, 성원 보충에 있어서 친족관계가 그 성원권을 특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小池 誠 146). 즉 가(家)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성원의 충원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우선 가(家)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부와 자식이라는 세대단위에 의해 몇 명의 자식 중 적자가 세워져 차례차례 계승하는 것이 기본이다. 중세 지배계층의 경우 가의 계승은 남계와 여계를 아울러 쌍계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다. 그러나 이는 형식만 쌍계적일 뿐 내면적으로는 남성 위주의 가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계의 경우 양자(養子)를 써서 적자(嫡子)로부터 적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의제적 관계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를 계승하는 적자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고, 가와 연결된 보유지의 계승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있었다(峰岸 純夫 182). 보유지의 일반적 상속이나 계승권, 그리고 그 경영권 등에서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는 중세조차도 그 모든 것이 적자의 가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녀 간 균분상속유희봉사와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²¹⁾

중세 이후 무사의 가는 이러한 가부장제적 원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

었으며, 근세에도 유지되다가 점차 소가족에 의해 구성된 가가 대세를 이루면서 점차 해체되어 갔다. 이후 메이지 민법이 정한 상속제가 일자(一子) 단독상속이며, 친족법 체계상 부계혈연 계보를 절대시해 왔다. 그러나 근세 이후 서민층은 부계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모계의 친족집단이나, 친족집단이 아닌 외부로부터 양자를 취하여 가를 지속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한 서민층의 경향은 현대에도 이어져 단계혈연 계보를 중시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를 존속시키고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조선시대와 에도시대를 전후한 시기의 한국과 일본의 가족이 어떤 양상으로 영속성을 유지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가족의 계승을 경제적인 재산상속과 인적인 가계계승의 양면에서 살펴보면, 두 요소의 연관성을 고려하였다.

가족을 유지·계승하는 장치로서의 재산상속의 경우 조선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남녀 균분상속의 기초가 17세기경까지 유지되었다. 또 17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점차 딸이 균분상속에서 제외되지만 그 후로도 아들 간에는 균분상속이 유지되었으며, 균분상속이 축소되는 가운데에도 분할상속의 기초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시대 초반까지 분할상속을 시행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여성이 균분상속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가장의 유언을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가부장적 분할상속이었다. 그리고 에도시대에 오면 장자 또는 1인 상속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분할상속의 기초를 유지하는

21) 한국의 고려에서 조선시대 17세기까지의 재산의 남녀 균분상속과 외손봉사 관행, 계후보다는 형망제급에 의한 가계계승 등은 부계사회이면서도 부분적으로 모계적 요소를 겸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과, 1인 상속 체제로 전환한 일본의 영속성의 지향 방식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가족을 유지·계승하는 장치로서의 가계계승은 조선의 경우 제사상속 또는 봉사와 구별되지 않았다. 조선의 양반 가계는 가계계승 자체가 아니라 조상을 봉사할 당사자로서의 후사(後嗣)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계계승 전략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자녀들이 공동으로 봉사하고 봉사자의 범위가 외손·첩자녀에까지 미쳤다. 조선 후기 그 범위가 친손으로 축소되면서 영속성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입양계사(入養繼祀)가 이루어졌는데 그 범위는 혈통을 공유하는 친족집단 내에 국한되었고, 장자 뿐 아니라 모든 지차 가계에도 영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지향하였다. 즉 종법적 원리를 따르는 듯하지만, 종자(宗子) 가계만의 계승이 아니라 모든 가계가 존속되기를 바라는 가계의 존속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가계계승의 목적을 조상의 제사에 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조선 특유의 현상이었다.

반면 일본은 에도시대 이후 1인의 가장을 정점으로 한 직계가족 및 소가족 경영체가 성립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재산상속 뿐 아니라 가계계승 역시 장자 혹은 1인의 능력있는 후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계계승을 위해 혈통이 다른 후계자의 영입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제사상속에 중점을 두는 조선과 달리 일본의 경우 가독상속이 가계계승의 핵심적 요소였기 때문이다. 또 조선의 경우 가족 공동체에도 신분제가 유지되고 신분이 계승되는 반면, 일본은 가 경영체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가직(家職)이 승계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상민과 노비 가계, 에도시대의 초닌(町人) 등 서민 가계의 경우 가계의 계승보다는 생존에 무게가 실리면서 재산의 소유와 상속을 통한 가족의 존속 방식 역시 다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친족제의 재편은 어느 사회에나 나타나지만 지배계층의 변화양상을 통해 전

반적인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평민들의 삶은 다양한 양상으로 생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 『與猶堂全書』 3集 「喪禮四箋」.
- 韓汝旆 외. 『譯註經國大典-註釋篇-』.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1986.
- 문숙자. 「조선전기 無子女亡妻 재산의 상속을 둘러싼 소송사례」. 『고문서연구』 5 (1993): 39-60.
- _____. 「고려시대의 상속제도」. 『국사관논총』97 (2001): 25-50.
- 문숙자 외. 『전통의 맥을 잇는 종가문화』.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 문옥표 외.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義城金氏 川前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 백산서당, 2004.
- 배상훈. 「조선의 상속관행에 관한 연구-17~18세기 삼남지방 분재기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8.
- 이노우에키요시. 『일본여성사』. 성해준, 김영희 옮김. 서울: 어문학사, 2004.
- 이혜옥. 「家와 家意識」.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하일식 편. 서울: 혜안, 2007. 99-137.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전주: 전북대학교, 1998.
- 정구복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 정궁식. 「조선초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6.
-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3.
- _____. 「신라시대 여자의 토지소유」. 『한국학보』40 (1985): 3002-3011.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2-부안 부안김씨판.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학기초자료선집』4-근세 2판.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 하토리 타미오(服部 民夫). 「朝鮮時代後期の 養子收養에 관한 연구-東萊鄭氏

- 派譜의 분석-]. 『韓國學報』11 (1978): 111-154.
- 後藤 みち子. 「南北朝室町期の女性の所領相續-單獨相續との關係」. 『家産と相續』. 日本家族史論集 9. 東京: 吉川弘文館, 2003.
- 服藤 早苗. 「「家」の成立と女性-『今昔物語集』の説話から」. 『中世の生活空間』. 戸田 芳実編. 東京: 有斐閣, 1993.
- 小池 誠. 「東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家と婚姻戰略」. 『家の存続戰略と婚姻-日本・アジア・ヨーロッパ-』. 國方 敬司・永野 由紀子・長谷部 弘 編. 東京: 刀水書房, 2009.
- 牧野 巽. 「東亞米作民族における財産相續制の比較」. 『社会科学評論』1-1 (1950): 2-22.
- 峰岸 純夫. 「中世社會の〈家〉と女性」. 家産と社會』. 日本家族史論集 4. 東京: 吉川弘文館, 2003.
- 長野 ひろ子. 『日本近世ジェンダ-論-「家」經營体・身分・国家-』. 東京: 吉川弘文館, 2002.
- 尾上 陽介. 『中世の日記の世界』. 東京: 山川出版社, 2003.
- 大竹 秀男, 牧 英正. 『日本法制史』. 東京: 青劭双書, 1975.
- 鈴木国弘. 「武家の家訓と女性」. 『家族觀の変遷』. 片倉比佐子 編. 東京: 吉川弘文館, 2002. 134-159.

Works Cited

- Bae Sang-Hoon. *Joseonui sangsokkwanhaenge kwanhan yeongu-17- 18segi samnamjibang bunjaegi saryereul jungsimuro* [A Study on Inheritance Action in the Chosun Dynasty—Cases of Bunjae-gi(分財記, a documentary draft describing each allotment partion of fortunes) from the three southern provinces in 17-18th Century]. Diss. Korea University
- Choi Jae-Seok. *Hanguk gajok jedosa yeongu*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family system]. Seoul: Iljisa, 1983.
- . “Sinrasidae yeojai tojisoyu” [The Landholding of Woman in the Shinla Period]. *Hangukhakbo* [Journal of Korean Studies] 40 (1985): 3002-3011.
- Chung Geung-Sik. *Joseonchogi Jesaseungyebeopjeui seongripe kwanhan yeongu* [Research on the Methode for the succession of ancestral rites].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6.
- Chung Gu-Bok etc. *Honamjibang gomunseo gichoyeongu* [Basis research of Old Documents in Honam province].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9.
- Goto Michiko. “Namboku Chou-Muromachi Ki no Josei no Syoryou Souzoku-Tandoku souzoku tonon kankei” [The Relation between Fief Inheritance and Single Inheritance of Woman in North South Cho · Muromachi Period]. *Kasan to Souzoku*. [Family Property and Inheritance] Tokyo: Yoshikawa Koubunkan, 2003.
- Goto Sanae. “「E」no Seiritsu to Zyosei-『Konzaku-Mono gatari-Shu』no Setswa kara” [Family Establishment Woman—from the tales of Konzaku-Monogatari-Shu]. *Chusei no Seikatsu Kukan kara* [Living Spaces in the Middle Ages]. Ed. Toda Yoshimi. Tokyo: Yuhikaku, 1993.
- Gyeonggukdaejeon*. [經國大典, The basics law books in the Chosun Period]
- Han, U-Geun et al. *Yeokjugyeonggukdae-juseokpyeon* [譯註經國大典-註釋篇- Translation of a Complete Code of Law in the Joseon Period - Annotation].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86.
- Hangukhak Jungang Yeonguw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omunseojipseong 2 - Buan buangimssipyeon* [Collection of the Old Documents 2 - Buan Buangim Family].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8.
- Hangukhak Jungang Yeonguwon pyeon [E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ngukhak gichojaryo seonjip 4-Geunse 2 pyeon* [Anthology of basics data about Korean Studies].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5.
- Hastori Tamio. “Joseonsidaehugiui yangjasuyange kwanhan yeongu-Dongraejeongssipaboui bunseok” [Research on the adaptation of son

-
-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Ages - Analysis on the Family Donrae Jeong]. *Hankukhakbo [Journal of Korean Studies]* 11 (1978): 111-154.
- I Hye-Ok. "Gawa Gaeusik" [Family and Family Consciousness]. *Goryeosidae saramdeului salmgwa saenggak [Life and Thoughts of High Society in the Goryeo Period]*. Ed. Ha Il-Sik. Seoul: Hyeon, 2007. 99-137.
- Inoue Kiyoshi. *Ilbonyeoseongsa* [History of Japan Women]. Trans. Seong Hae-Jun, Gim Yeong-Hi. Seoul: Eomunhaksa, 2004.
- Jeonbuk daehakyo bakmulgwa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Bakmulgwandorok-Gomunseo* [Museum Catalog-Old Documents]. Jeonj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998.
- Koike Makoto. "Higashi Indonesia niokeru Ie to Konnin Senryaku" [Family and Marriage Strategies in East-Indonesia]. Ed. Kokubo Keizi-Nagano Yukiko-Hasebe Hiroshi. *Ie no Sonzoku Senryaku to Konnin-Nihon-Asia-Europe [Strategies of Family Subsistence and Marriage - Japan · Asia · Europe]*. Tokyo: Tousuishobou, 2009.
- Makino Tatsumi. "Toua Beisaku Minzoku niokeru Zaisan Souzokusei no Hikaku" [Comparison of Property Inheritance among Agricultural Nations in East Asia]. *Shakai Kagaku Heiron [Journal of Sociology]* 1-1 (1950): 2-22.
- Minegisi Sumio. "Chusei Shakai no <Ie> to Josei" [Family and Women in Medieval Society]. *Kasan to Shakai [Family Property and Inheritance]*. Tokyo: Yoshikawa Koubunkan, 2003.
- Moon Sook-Ja. "Joseonjeongi Mujanyeomangcheo jaesanui sangsokeul dulreossan sosongsarye" [The lawsuit cases on the inheritance of property of wives who died without her childre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Gomunuseo Yeongu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5 (1993): 39-60.
- . "Goryeosidaeu sangsokjedo" [The Inheritance System in the Goryeo Period]. *Guksakwannonchong [Treatises on Korean History]* 97 (2001): 25-50.
- Moon Sook-Ja et al. *Jeontongui maekeul isneun jonggamunhwa* [The Main Family culture, that succeeds the traditional stream]. Andong: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2008.
- Moon Suk-Pyo et al. *Joseonyangbanui saenghwalsegye: Uiseonggimssi cheonjeonpa gomunseo jaryoreul jungsimeuro* [The Living World of the Joseon Aristocrat]. Seoul: Baeksanseodang, 2004.
- Nagano Hiroko. *Nihon Kinse Gender Ron - [Ie] Keieitai-Mibun-Kokka* [Gender Ideology in Modern Japan-Family Management · Status · State]. Tokyo: Yoshikawa Koubunkan, 2002.
- Onoue Yosuke. *Chusei no Nikki no Sekai [The World of the Diaries in the Middle Ages]*. Tokyo: Yamakawa Shuppansya, 2003.
-

-
- Otake Hideo, Maki Hidemasa. Nihon Hoseisi [History of Law in Japan]. Tokyo: Seikhan Sousyo, 1975.
- Suzuki Kunihiro. "Buke no Kakun to Josei". *Kazokukan no Hensen [Changes in the Concept of the Family]*. Ed. Katakura Hisako. Tokyo: Yoshikawa Koubunkan, 2002. 134-159.
- Yeoyudangjeonseo 3 Jip Sangryesajeon [與猶堂全書 3集 喪禮四箋, Compendium of Yeoyudang(Jeonng Yak-Young) Vol. 3, The Funeral Manner 4].

Comparison of Families in Modern Korea and Japan : From Aspect of Realization of Permanence

MOON Sook-ja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families of Korea and Japan maintained their permanence in the period of Joseon and Edo.

As for inheritance of property, in Joseon, divided succession had been sustained. In Japan, the patriarchal divided succession was converted into primogeniture or one-man inheritance in the Edo period. For family succession, in Joseon, the strategy of family succession was not for the succession itself but for preventing not having a son as the one who perform ancestral rites. Unlike Joseon which focused on succession of ancestral rites, Japan made inheritance of family headship a key factor of family succession.

As mentioned above, modern Korea centering on retention of families and Japan focusing on succession of families had different methods of realizing permanence of families due to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families.

Keywords : Inheritance of property, Family succession, Permanence, Inheritance of family headship, Adoption for succession of ancestral rites (재산상속, 가계계승, 영속성, 가독상속, 입양 계사)

Received: 15 April 2013 Reviewed: 10 May 2013 Accepted: 15 May 2013
